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5 | 2026.3.30 (2026.3.23~2026.3.2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부>는 기업이 ESG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혁신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혁신 성장, 지역인재 육성, 공정한 시장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도약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인증 기준 중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는 등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7인)**」,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며, 인증제도를 방산 분야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의원 등 17인)**」 ,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도·상담·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제공 금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등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 ,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키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의원 등 11인)**」 ,

사용자가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

연결차단권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업무의 성질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및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 등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연결가능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8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정무위>, <기후노동>,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과방위>에서는 방미심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6~'30)」 발표(산업통상부) 8
-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11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11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11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1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2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의원 등 11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의원 등 13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7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2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22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의원 등 17인) 22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	24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24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26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26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7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7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2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2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29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28인)	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3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8인)	31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23인)	3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소송]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발표 – 점검 대상 대폭 확대 및 제재부가금 상향
-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및 제재조치 수준 대폭 강화
- [건설/부동산] 항소심에서 소위 알박기 목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 **[건설/부동산]**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한 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
- **[건설/부동산]** 장래 발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상발주물량(forecast)의 제시 및 테스트 공급만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받은 사례
- **[방송통신(TMT)]** 수억 원대 외산 공장 솔루션, ‘국산 피지컬 AI’로 대체 본격화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6)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6~’30)」 발표 - 올해 중소·중견기업 500개사에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지원 - ’28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 구축	2026-03-25
-------	---	------------

최근 글로벌 원청사들은 공급망 실사 규범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게 ESG 데이터 제출 및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협력사의 공급망 배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부는 기업이 ESG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혁신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① 지속가능경영 기반 산업경쟁력 확보

매년 조선, 방산 등 주력 업종을 선정해 ESG 정보제공부터 수준 진단,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업종별 특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함. 특히, 올해는 500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 또한, 연 450명 수준의 권역별 실무자 교육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30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자격제도를 내년까지 개발하여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28년부터는 전문 ESG 컨설팅 법인 지정제도를 신설함. 중소·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지속가능경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교와 협력하여 기업수요 기반 실무 연계형 인턴십을 매년 100명 규모로 운영함

또한, 공급망 내 실질적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ESG 특화 기술을 보유한 사회적 기업 등과 대기업 간 매칭을 추진·지원

② 글로벌 표준과 규범화 대응역량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경영 등 ESG 관련 표준 논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제 ESG제도 수립에 있어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EU 산업정책대화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ESG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글로벌 공급망 실사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협력사에 대한 관리도 중요함. 국내 대기업과 함께 ESG ODA 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 내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ESG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임

③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실천·확산 기반 마련

공급망 실사가 일반화될수록 중소 협력사들이 각 원청사에게 유사한 ESG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은 커지게 됨. 이에, '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료 입력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의 대기업이 협력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실사 이행 부담을 완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협회가 운영중인 사회적 책임 기반 지수를 'K-ESG 지수'로 전면 개편하며 이와 연계한 인증제도를 도입

관계부처 합동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표

-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중소기업·전문가 현장 목소리 청취
- 혁신 성장, 지역인재 육성, 공정한 시장 조성으로 중소기업 도약 도모

2026-03-23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음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

둘째, 똑똑한 공장으로 생산성을 높임.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공정이 개선되고 경영성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K-뷰티, 푸드 등 유형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육성

셋째, 해외시장 개척. 내수기업이 수출로 첫 걸음을 뚫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지원하고 수출 전환 시 지원·육자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

넷째,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으로 모두의 성장. 점프업 프로그램 본격 추진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성장 기회를 제공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역 특화 중소기업 인력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 고용 촉진, 정책 인프라 강화로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첫째, 지역 중소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현장 인재를 양성. 지역 중소기업에 맞는 AI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사회적 논의체(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를 통해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확대

둘째,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훈련수당뿐만 아니라 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전반으로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확대

셋째, 격차 해소를 위한 원·하청간 대화와 협력을 지원. 올해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상생교섭 컨설팅 등을 현장에 밀착 지원

[대·중소 격차 해소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공정위는 협상력 격차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포용적 시장질서를 확립

첫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乙의 협상력을 보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 대상 단체협약의 등에 대하여는 담합 규정 배제를 검토하는 등 단체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

둘째, 중소기업 협상력의 원천인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확대. 숨은 피해발굴을 위한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협력 체계 구축 등 기술탈취 감시 체계를 강화

셋째, 甲乙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역량을 제고.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대금 미·지연지급, 비용전가, 부당 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감시하여 위반행위는 엄정 제재

넷째,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커지도록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 과징금 부과에 있어 정액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10-02 시행 예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03-26 시행
----------	--------------------------------	---------------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의 지정 절차, 민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절차,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6-03-26 시행
----------	---------------------------------	---------------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5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6호, 2026. 3. 24. 공포, 2026. 3.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신청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절차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분할납부 신청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3-26 시행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3. ~2026.04.22.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및 시행)

이에,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심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전화: 044-202-6942, 팩스: 044-202-6048)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6. ~2026.05.06.
-------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중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상향 조정하여 제약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혁신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한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여 인증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 ① 인증 기준 중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100분의 2씩 상향 조정
- ②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는 규정 신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전화: 044-202-2969, 팩스: 044-202-394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6. ~2026.05.06.
-------	------------------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간을 단축하고,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개선 (안 제24조제1항)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내에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최대 1년 6개월) 연장을 허용하도록 개선함

②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 (안 제29조제1항, 제5항)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던 업무분담지원금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 확대 (안 제41조제2항)

- 내·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함

④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 정비 (안 제9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신설로 육아휴직을 주 단위(1주 또는 2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월 단위의 육아휴직 감액 기준을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1주 또는 2주)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tel:044-202-7918)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4.
~2026.05.04.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포, 2026.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회별 최소 참여 인원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협력 받아야 하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 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 된 경우 보강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전화: 044-201-4897, 팩스: 044-201-5684\)](tel:044-201-4897)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5.
~2026.04.17.

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2.10. 공포, 2026.5.11. 시행)에 따라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아니한 운송계약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전화: 044-201-3813, 팩스: 044-201-5582\)](tel:044-201-3813)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7.
~2026.05.0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7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조사 사전 통지 기한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5273, 팩스: 044-201-5582\)](tel:044-201-5273)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4.
~2026.05.0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9호, 2024. 2. 6. 공포, 2027. 2.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 (안 제83조의3)

-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함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외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의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함

② 송달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방법 (안 제83조의4)

- 당사자등이 전자심의시스템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전자우편, 문자메시지등)하여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등이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함

③ 전자문서 확인 불가 기간의 계산 방법 (안 제83조의5)

-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의결서·재결서 2주, 그 외 7일, 이하 같음)에 불산입하도록 함
- 다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④ 고시 제정근거 마련 (안 제83조의6)

-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등 그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전화: 044-200-4134, 팩스: 044-200-5206\)](tel:044-200-4134)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5.
~2026.05.06.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 및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 등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제2항, 제6조의7제5항)

-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제 관련 서면 기재사항을 ‘주요 에너지’까지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내용에 에너지 비용의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을 추가함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예외사유 삭제 (안 제8조제1항)

- ③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의무의 예외로 규정 (안 제8조제2항)
- ④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 (안 제10조의2제2항)
- ⑥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에 대해 추가 벌점 경감 부여 (안 별표3)

※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tel:044-200-4946) (전화: 044-200-4946, 팩스: 044-200-4977)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4.
~2026.05.04.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 ①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 (안 별표 3)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tel:044-204-7903) (전화: 044-204-7903, 팩스: 044-204-7989)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25.
~2026.05.04.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 (안 별표1)

※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tel:044-200-4409) (전화: 044-200-4409, 팩스: 044-200-446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2026-03-24 발의
---------	--------------------------	---------------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제37조에 의해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률안이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체계등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등의 기본법과 파산·회생, 임대차, 국제법무 등 많은 민생법률들에 대한 법안심사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부수적 업무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회의 상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단원제 국회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이에,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체계·형식 및 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자구심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2026-03-23 발의
-------	---	---------------

현행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상장법인들이 영업이익 급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자본잠식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투자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인 지연 공시는 투자자의 즉각적인 시장 대응을 가로막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 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 391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6-03-23 발의

미국,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음. 수시배당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월급처럼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임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금융자산은 예금에 편중되어 있고 7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자산 대비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0.2%에 불과함. 또한, 주주환원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나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65조의12 등)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2인)

2026-03-23 발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임.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2026-03-24 발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5항)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의원 등 11인)**

2026-03-25 발의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8조제1항)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의원 등 13인)**

2026-03-27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7인)

2026-03-23 발의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2026-03-24 발의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내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2026-03-25 발의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1항)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의원 등 17인)

2026-03-26 발의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여 전략적 육성 정책의 기틀을 잡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지속적인 육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출 지원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방산 분야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증 비용·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도를 방위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접근해 중소·벤처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함. 또한, 인증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우수 기업은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방연구개발 참여와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의원 등 10인)

2026-03-24 발의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 2,7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11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위하여 이미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인공지능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전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우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발표하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원 법령이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와 구분되는 고성능 인프라임에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과 관련하여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분산 인프라가 핵심임에도 이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인프라로서의 위상 및 정책적 투자 유인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2026-03-25 발의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환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맞춤형추천(알고리즘) 기능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한 자기통제·위험판단 특성상 과몰입이 수면·학습·정서 영역의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마주하는 서비스의 설계·운영 방식(알고리즘 추천, 이용유도 기능 등)에 대한 최소 기준과 정보제공 책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보호자·학교의 부담은 확대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남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도·상담·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

2026-03-26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으로 청소년유해정보, 합성영상 등 및 각종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단순히 유통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생성·편집·합성·가공되어 제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유통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모사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경우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도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제공 금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 합성영상 등 및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제공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의4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2026-03-27 발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계 등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최종적인 사업화 성과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026-03-27 발의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료표준제 및 과징금을 부과함.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부담금은 7103억원에서 2030년 1조3927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정부는 무탄소 선박 개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업계는 행정·재정·기술·업무협력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연료 공급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특히 기술개발, 실증·보급, 산업 기반 조성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초대형에탄운반선, 벙커링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 포함 등 업계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03-23 발의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2026-03-26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안 제35조)**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2026-03-23 발의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사후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안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5항,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026-03-25 발의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026-03-25 발의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4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026-03-25 발의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6-03-26 발의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초기 시장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인증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6-03-23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자인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지위가 개인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이 행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2026-03-23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충분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중대재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제3항 및 제175조제4항제4호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2026-03-25 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노후설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4)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28인)

2026-03-25 발의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 및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NDC) 설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변화를 지원해 왔

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25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업의 육성이나 기업들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 사례가 부족한 실정임

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의 ‘GX 추진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정·금융·세제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투입·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달라진 국제적 경제 질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하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2026-03-25 발의

결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근로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가 제도가 미비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특히 예식 준비,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가족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결혼 전 피로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결혼식 당일 또는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결혼 준비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사용자가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2026-03-26 발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수열, 하천열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한 에너지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6-03-26 발의

디지털 초연결시대의 도래로 기업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자에게 쉼 없이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상시적으로 연결된(ever-connected)', '항상 켜져 있는(always on)' 또는 '지속적으로 호출을 대기하는(constantly on-call)' 상태를 사실상 강요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균등한 고용관계 속에서 이를 제어할 국가제도는 공백 상태에 있어 노동자의 온전한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특히 퇴근 후에도 업무 알림이 울리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다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아울러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퇴근 후 업무지시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함에도, 연장근로수당 등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2016)에 따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임에도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1주 당 평균 11.3시간에 달하며 노동자들이 퇴근 후 업무지시·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오히려 임금의 평균 8.7%에 해당하는 액수를 거꾸로 지불할 용의까지 있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유럽의회 결의안을 참조하여 **연결차단권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업무의 성질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및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 등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연결가능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8인)

2026-03-23 발의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 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안 제57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23인)

2026-03-26 발의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1996년 준공된 후, 2015년 7월 근로자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되었으나, 대덕구청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으나, 난연성 건축자재로의 교체와 피난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도록 감독하지 못했음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물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현행법에 따라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한 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여 불법 증축에 대한 단속과 가연성 건축자재 교체, 화재사고 대비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 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제18조 및 제27조)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2026-03-24 발의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발표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2배 이상 늘었음

경남 창원에서 최근 발생한 중학생 모텔 살인사건 또한 메신저 플랫폼을 통한 익명 채팅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SNS, 메신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또는 유인 등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에서는 메신저, SNS 등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아동 성착취 또는 온라인 유인 정황 등의 발생을 알게 되면 이를 미국 실종·아동착취 방지센터(NCMEC)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관할 수사기관 등에 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있음

이에 국내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통합 체계를 신설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안 제2조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1소위	3/30(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3/30(월) 14:00	- 법안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3/31(화) 10:00	- 법안 상정,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법안1소위	3/31(화) 11:00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4/1(수) 10:00	- 법안 심사
과방위	전체회의	4/1(수) 10:00	- 방미심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소위	4/1(수) 10:00	- 법안 심사
	고용노동 법안소위	4/2(목) 13:30	- 법안 심사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3/30(월) 10:00	- 법안 심사
	교통법안소위	3/30(월) 15: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4/1(수) 10:00	- 법안 의결, 법안 및 청원 상정, 업무 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30(월) 09:30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축법 개정 국회 토론회	염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3/30(월) 14:00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벤자민K. 소바쿨 교수 초청 강연회	윤종오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3/31(화) 10:00	AI 윤리 정책의 미래와 AI 기본법 개정 방향	조승래·강민국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3/31(화) 10:00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복기왕·권영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3/31(화) 14:00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 이후, SMR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최형두·윤한홍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4/1(수) 14:00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	고동진·최형두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4/1(수) 14:00	이란戰으로 본 AI 전쟁: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	부승찬·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4/1(수) 14:30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우재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2(목) 09:30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	박주만·김영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4/2(목) 10:00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김현정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4/2(목) 14:00	수도권 집중을 깨다: AI로 완성하는 지방분권 3.0	정동영·김태년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4/3(금) 14:00	국방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강대식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3/31(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026-5호(통권 제293호) 발간	국회도서관	
	4/1(수)	「금주의 서평」제2026-12호(통권 제771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23(월)	「최신외국정책정보」제2026-4호(통권 제28호)	국회도서관	
	3/25(수)	「Data&Law」제2026-2호(통권 제40호)		
	3/25(수)	「금주의 서평」제2026-11호(통권 제770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23(월)	소송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발표 - 점검 대상 대폭 확대 및 제재부가금 상향
3/23(월)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및 제재조치 수준 대폭 강화
3/24(화)	건설/부동산	항소심에서 소위 알박기 목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3/25(수)	건설/부동산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한 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
3/26(목)	건설/부동산	장래 발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상발주물량(forecast)의 제시 및 테스트 공급만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받은 사례
3/26(목)	방송통신(TMT)	수억 원대 외산 공장 솔루션, ‘국산 퍼지컬 AI’로 대체 본격화
3/27(금)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6)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